감당 안되는 간병비에 골병…간병서비스 제도 정착 절실

간병에 짓눌린 가족들

〈하〉 국가가 적극 나서야

간호사가 할 일도 간병인이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참여
광주 10.33% 전남 9.63% 불과
'독박 간병'에 가족 붕괴 위험까지
의료비 인정 등 대책 마련 서둘러야

광주지역 한 종합병원의 간병인 A(여·56)씨는 자신이 돌보는 입원 환자를 위해 목관을 통해 가래를 빼내고(석션), 코나 배에 삽입한 호스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관 급식'(피딩), 투약 등의 행위를 매일 1년 넘게 하고 있다. 병원 입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27조)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도 병원 측 묵인하에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욕창방치 체위 변경, 대소변 변기 등도 간병인들의 기본적 업무로 취급된 지 오래다.

가래를 빼내는 석션을 하다 환자가 구토를 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해 간호사에게 요청을 하면 "모든 병원에서 그런 일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핀잔을 준다. 간호사조차 자신이 해야할 일을 간병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병원과 보호자·간병인 모두 의료법 위반의 공범인 셈이다.

병실에서 간병인이 상주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간병에 관한 것은 의료서비스로 병원이 해야할 역할이다.

하지만 입원 환자를 병원의 전문 인력이 아닌, 환자 보호자가 책임지고 돌보는 듯한 장면은 국내 병원 입원실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현재 간병인의 직업은 프리랜서나 다름없다. 환자와 일대일 계약으로 일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못한다. 관리감독기관도 없다.

하루 24시간 환자 곁에서 한눈 팔 시간도 없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잠시 밖에 나가 반찬거리를 산다던가 은행일을 보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

하루 15만 원 안팎, 한 달에 400만 원 훌쩍 넘는 간병비를 환자 가족이 부담하면서도 의료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장기간 병상에 누워 있는 가족을 돌보다 간병 파산·간병 살인 등 '간병비극'도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간호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답보 상태다. 간병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려면 병원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시민단체인 간병시민연대가 최근 연 '간호간병 문제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간병과 돌봄 책임이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겨지고 국가는 책임을 방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 수 증가, 가족기능 축소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로 국가가 더는 간병 문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간병 서비스의 제도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간병하는 짐을 가족에게만 떠안기는 '독박간병'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 붕괴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협동조합 '건강벗'의 김원일 이사는 "간호인력 확보 방안이 없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간병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한 것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간호팀(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첫해인 2015년 누적 7443병상에서 2016년 1만 8646병상, 2017년 2만 6381병상, 2018년 3만 7288병상, 2019년 4만 9067병상 그리고 2021년 8월 현재 6만1352병상으로 늘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 하지만 ▲간호인력의 수도권병원·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비수도권병원·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당장, 올해 광주의 경우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참여대상 병상 대비 참여율이 10.33% 전남은 9.63%에 불과해 전국 평균 22.03%에 현저히 모자랐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공공적 공급이 떨어진다는 점,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 지나치게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간병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간병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주 추돌사고로 2명 숨졌는데 불구속 수사?

유사사건과 기준 달라 의문 제기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중이다. 피해자측과 합의할 시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만 유사 사건과 비교해 사건 처리 기준이 달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9시 50분께 광양시 초남터널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0대 회사원 A씨가 몰던 K7차량이 앞서가던 B씨가 몰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C(68)씨와 D(59)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와 또 다른 탑승객 2명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7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 반면, 구속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 기준은 달랐다.

광주지역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담당 경찰 판단에 달렸다"며 "구속수사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일정한 주거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경력,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당 경찰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5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사고로, 최근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범죄 경력이 없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광양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할 시간도 주어지지 못했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마음을 녹여주는 겨울꽃 단장 17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직원들이 공터나 도로변 화단에 심을 꽃팬지와 꽃양배추 등 겨울꽃을 동행정복지센터에 보내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시장 친분 과시 취업 사기 광주시, 경찰에 수사 의뢰

광주시가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채용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가 이날 채용사기를 당했다는 민원인 제보를 접수받아 광주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취업사기 관련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시장 또는 광주시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채용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이날 광주시를 방문해 자신을 시장 측근으로 소개한 60대 남성 A씨가 "시 산하기관에 자녀를 채용시켜주겠다"며 "1억2000만원을 받고 잠적했다"고 호소했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민원인은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만 10여명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

형 무겁다며 항소했다가…두 배 높은 형 선고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해 형량이 낮아졌는데도 '1심 형(刑)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두 배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기를 마친 뒤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형의 장기(長期) 2배까지 가중한다'는 형법의 누범 가중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데 1심이 제대로 법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그나마 A씨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을 올릴 수 없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부가 형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여수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2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8차례로, 3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지난 2019년 12월 징역 1년의 형기를 마친 뒤 1년 3개월여만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만큼 누범(累犯) 기간이었다고 판단했다. 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형법 35조 누범에 해당하므로 누범 가중을 한 뒤 처단형을 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며 "8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데 최근 3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